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홍콩한국국제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①-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①-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③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④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제2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전담기구

제3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 학생의 보호
 3.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치위원회의 구성)

- ① 자치위원회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본교의 교무부장
 2. 본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와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본교를 관할하는 영사관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자치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자치위원회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명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자치위원회의 운영)

-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토의내용 및 의결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아동 심리와 관련된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학교폭력담당교사가 한다.
- ⑥ 자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학교 소속 교원이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6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에 학교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안처리 등)

- ① 학교폭력담당교사(이하 “담당교사”라 한다)는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에게 사안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받는다.
- ②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 및 징계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

가 있음을 통보한다.

- ③ 담당교사는 피해학생진술서, 피해학생보호자의견서, 가해학생진술서, 가해학생보호자의견서, 담임의견서, 담당교사의 사건경위서, 상담교사의견서, 상담 의사의 소견서 가운데 필요한 것을 회의 자료로 제출한다. 다만, 가해학생 및 학부모가 자치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진술의견서로 이를 대신한다.
-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 자료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행한다.
- ⑤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징계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⑥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⑦ 피해측과 가해측의 학생과 학부모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도 담임교사 또는 학교의 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운영)

- ① 학교의 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창의인성부장이 겸임한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교무부장,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담당교사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7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 ⑤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⑥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⑦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⑧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⑨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의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3장 보호 및 조치

제10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

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이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 제6항을 준용한다.

제11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규정 제12조에 준용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퇴학처분

-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 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학교의 장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⑩ 가해학생이 제1항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경우 본교로 재입학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⑫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12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제11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 ①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②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③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④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⑤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별표1]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 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해 당 점 수 에 따 른 조 치 에 도 불 구 하 고 가 해 학 생 의 선 도 가 능 성 및 피해학생 의 보호를 고 려하여 시행 령 제14조 제 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 치 위 원 회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 으로 가해학 생에 대한 조 치를 가중 또 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 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 내 선 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1~3점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외 부 기 관 연 계 선 도	4호	사회봉사	7~9점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교육에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외	8호	퇴학처분	16~20점					

제13조(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① 제11조 제4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장 분쟁 조정

제14조(분쟁조정)

-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 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제14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①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 ②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 ③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제16조(분쟁조정의 개시)

-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해야 한다.
- ②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 ④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7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피해 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내야 한다.
 - 1.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③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

해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 결과 처리)

-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은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가. 분쟁의 경위
 -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 학교의 장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학교의 장이 각각 서명·날인해야 한다.
-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과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의무

제19조(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①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④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 ⑤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징후 판별,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요령,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장의 의무)

- ① 학교의 장은 제10조, 제10조의 2, 제11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 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 ① 이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 ③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 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신상 정보 유출 및 심리적 상처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제6장 규정의 제·개정

제23조 (규정의 제·개정)

- ①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식1]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사안번호:							
학교명	홍콩한국국제학교	교장	성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접수일시	_____년 ____월 ____일 :						
신고자	※ 신고자가 익명을 희망할 경우 익명 처리				사안인지 경로	직접신고 / 보호자자신고 / 교사신고 / 주변학생신고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접수한 내용 간략하게 기재							
관련학생	학년	성명	보호자통보여부		비고		
기타사항							

[양식2]

학생 진술서

사안번호:						
진술학생	학년		성명		성별	남 / 여
	연락처				보호자연락처	
관련학생	학년	이름	관련 내용			
사안내용	※ 피해받은 사실, 가해한 사실, 목격한 사실 등을 육하위칙에 의거하여 상세히 기록해 주세요.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비고						
작성일	년 월 일			작성학생	(서명)	

[양식3]

보호자 진술서

사안번호:						
해당학생	학년		성명		성별	남 / 여
사안 인지 경위						
현재 자녀 상태	신체적					
	정신적					
자녀 관련 정보	교우 관계	※ 평소 친한 친구가 누구이며, 최근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폭력 경험 유무 및 내용	※ 실제로 밝혀진 내용 이외에 의심되는 사안이 있는지 등				
	(사안에 대해) 자녀에게 확인한 내용	※ 사안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게 말한 것				
현재까지의 부모 조치 (병원 진료, 화해 시도 등)						
사안 해결을 위한 관련 추가 정보 제공						
본 사안 해결을 위한 부모 의견 및 바라는 점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양식4]

담임 의견서

사안번호:						
해당학생	학년		성명		성별	남 / 여
담임 의견	※ 해당 학생의 평소 성격 및 생활 태도, 사안과 관련된 추가 정보, 사안 관련 조치 의견 등					
비고						
작성일	년 월 일			작성교사	(서명)	

[양식5]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사건 경위서)

사안번호:				
접수일자	_____년 _____월 _____일			담당자
관련학생	학년	이름	성별	관련 내용
사안개요	※ 사안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			
쟁점사안	○○학생 주장 내용			
	◇◇학생 주장 내용			
	□□학생 주장 내용			
	△△학생 주장 내용			

사안 진행 및 조치 사항	
특이사항	※ 긴급조치 여부, 성관련 사안, 고소 고발 등

[양식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안번호:			
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피해학생	결정사항	표결내용
	가해학생	결정사항	표결내용
작성자	(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

[양식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

사안번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년	성명	학년	성명
조치원인			
조치결정일	_____년 ____월 ____일		
조치사항	피해학생		
	가해학생		
가해학생 불복절차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20			
홍콩한국국제학교장 [직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동의서 및 비밀 서약서

상기 본인은 홍콩한국국제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하며,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위와 같은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경우에는 제22조 등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서명)

홍콩한국국제학교장 귀하

[양식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위촉(임명)장

성명 :

소속 :

주소 :

위촉(임명)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위 사람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콩한국국제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임명)합니다.

20 년 월 일

홍콩한국국제학교장 [직인]

[양식10]

홍콩한국국제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사안번호:			
일시	_____년 _____월 _____일		장소
참석자			
심의주제	사안번호 ()호 ()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심의내용	전담기구 사안 조사 내용		
	필수 확인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요건	해당여부(O, X)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결정사항			
작성자	(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	(인)